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은행과, 자본시장과,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		
책임자	이형주 과장(2100-2830)	담당자	이인옥 서기관(2100-2831) 정태호 사무관(2100-2833)	
	김진홍 과장(2100-2950)		김성진 사무관(2100-2951)	
	박민우 과장(2100-2650)		김성준 서기관(2100-2651)	
	신진창 과장(2100-2990)		최치연 사무관(2100-2991)	
	김동성 국장(3145-8300)		이성원 부국장(3145-8001)	

제 목 :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-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20대 금융 모습 -

1.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.

- ① [계좌통합관리서비스] 홈페이지(www.accountinfo.or.kr)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이 확대(17시→22시)됩니다. (4월, 이용시간 확대는 10월)
- ② [인터넷전문은행]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「내 손안에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」이 '17년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.(2월)
- ③ [로보어드바이저]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됩니다.(2분기)
- ④ [KSM 통한 크라우드펀딩증권 매매]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)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.(상반기)
- ⑤ [금융규제테스트베드]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됩니다.(상반기)

⑥ [독립투자자문업]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개시합니다.(상반기)

2.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집니다.

- ⑦ [실손의료보험 개편] 보험료가 저렴(25%↓)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,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(10%↓)됩니다. (4월)
- ⑧ [금융취약계층 보호] 고령자에 대한 보험,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되고,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됩니다.(4월)
- ⑨ [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강화]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,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됩니다.(2분기)
- ⑩ [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]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(예: 사망보험금 4500만원→8000만원)되고,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.(3.1일)
- ⑪ [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]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(3.1일)

3. 서민과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.

- ⑫ [창업·벤처전문 PEF 도입] 창업·벤처기업에 50%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.(1.1일)
- ⑬ [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도입]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됩니다.(1.1일)
- ⑭ [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개편]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(120~144만→240만)되어 목돈 마련이 더욱 용이해집니다.(2월)

15 [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]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(최대 1.8%p↓)됩니다.(1.12일)

16 [정책모기지 개편]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(디딤돌: 주택가격 5억원+소득 6천만원 미만, 보금자리 : 주택가격 6억원+소득7천만원 미만)으로 확대(41조→44조)됩니다.(1.1일)

4.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.

17 [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] 집단대출과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'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'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됩니다.(1~3월)

18 [가격급락종목 공매도제한]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. (1분기)

19 [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]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(헤지전용계좌 도입)하고,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인하됩니다.(2분기)

20 [공모주 환매청구권]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.(1.1일)

[붙임1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

[붙임2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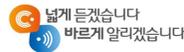
[붙임1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

1.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.	
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(4월)	홈페이지(www.accountinfo.or.kr)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인터넷전문은행(2월)	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'내 손안에'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 '17년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.
③ 로보어드바이저(2분기)	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됩니다.
④ KSM 크라우드펀딩 증권매매(상반기)	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)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.
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(상반기)	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 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됩니다.
⑥ 독립투자자문업(상반기)	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개시합니다.
2.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집니다.	
⑦ 실손의료보험 개편(4월)	보험료가 저렴(25%↓)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,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(10%↓)됩니다.
⑧ 금융취약계층 보호(4월)	고령자에 대한 보험, 대출상품 등 관련 판매절차가 강화되고, 금융회사 영업점에 장애인 전담창구 설치가 확대됩니다.
⑨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강화(2분기)	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 등이 도입되고,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됩니다.
⑩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확대(3.1일)	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(예:사망보험금 4500만원→8000만원)되고,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.
⑪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(3.1일)	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3. 서민과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.	
⑫ 창업·벤처전문 PEF 도입(1.1일)	창업·벤처기업에 50%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.
⑬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(1.1일)	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됩니다.
⑭ 농어가목돈저축 장려금개편(2월)	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(120~144만→240만)되어 목돈 마련이 더욱 용이해집니다.
⑮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(1.12일)	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(최대 1.8%p↓)됩니다.
⑯ 정책모기지 개편(1.1일)	정책모기지 공급규모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(41조→44조)됩니다.
4.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.	
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(1~3월)	집단대출·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'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' 갚는 여신관행이 도입됩니다.
⑱ 가격급락종목의 공매도제한(1분기)	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.
⑲ 파생상품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(2분기)	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,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인하됩니다.
⑳ 공모주 환매청구권(1.1일)	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[붙임 2]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.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도입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.				
1	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실시 확대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ccount-info 홈페이지(www.accountinfo.or.kr)를 통해서만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제공채널 확대('17.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은행창구 및 모바일 앱(현재 개발중)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시간 연장 ('17.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이 9~17시에서 9~22시로 연장 	<p>서비스제공채널 확대('17.4월)</p> <p>이용시간 연장 ('17.10월)</p>	<p>금융위원회 은행과 (2100-2953)</p> <p>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3145-8030)</p> <p>금융결제원 (531-1720)</p>
2	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	<p>(신규도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7년초 부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「내 손안에 뱅크」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영업개시 * 이용가능 시기(잠정): 케이뱅크(1월말~2월초), 카카오뱅크(2분기) ○ 핸드폰으로 결제·송금, 예금가입, 대출,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	'17.2월	<p>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00-2951)</p> <p>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02-3145-8035)</p>
3	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국민자산관리 개시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·일임서비스 제공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인력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 자문과 일임 서비스 제공 *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해 프로그램의 유효성·안정성 점검(~'17.4월) 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('17.2분기)</p>	<p>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02-2100-2664)</p> <p>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(3145-6702)</p>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4	KSM을 통한 클라우드펀딩 증권 매매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 후 1년간 매도할 수 없음 * 단,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매도 가능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, '16.11월 개설)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제한 없이 매매 가능 	<p>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'17년 상반기)</p>	<p>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2100-2674)</p> <p>한국거래소 스타트업시장팀 (3774-9625)</p>
5	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	<p>(신규도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전에 규제부담 없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해볼 수 있도록 허용 -위탁테스트 :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수행 -비조치의견서 :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용대상 금융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제재를 면제 -지정대리인 :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인허가받은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사업 수행 	<p>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 ('17년 상반기)</p> <p>지정대리인 ('17년 하반기, 업무위탁규정)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3)</p>
6	독립투자자문업 도입	<p>(신규도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판매회사 등과 독립되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(IFA) 제도 도입 - IFA를 통한 자문서비스 이용시 자문부터 판매까지 One-stop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시 투자권유절차 간소화 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('17.3월)</p>	<p>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2100-2668)</p> <p>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(3145-6711)</p>

연 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.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집니다.				
7	실손의료보험 개편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확실히 보장하는 형태의 단일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공급함에 따라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실정 ○ 보험금 청구시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고,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큰 불편으로 작용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장범위를 기본형과 특약*으로 개편하여, 필요한 부분만 선택가입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특약① 도수치료등 ②비급여주사제 ③비급여MRI -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약 25% 저렴하게 가입 가능 ○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차년도 보험료를 10% 이상 할인 ○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	<p>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('17.4월)</p> <p>*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는 상반기중</p>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2100-2963)</p> <p>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(3145-8247)</p>
8	고령자·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 편의성 제고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령자·장애인 등에 대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보다 강한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 규율체계가 부재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령자에 대해 대출·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시 정보제공·설명의무가 강화된 판매절차 적용 ○ 금융회사별로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, 점포별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및 전담창구 확대 추진 	<p>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(‘17.1.1.)</p> <p>*고령자·장애인 관련 개선사항은 4월 시행예정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(2100-2637)</p> <p>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국 (3145-5688)</p>

연 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						
9	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투자자보호 체계 강화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려면 적합성 원칙*,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,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는 금지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LS·DLS, 원본보전 옵션이 없는 변액연금을 판매할 경우, 적합성 보고서* 교부를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투자권유 사유,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○ 부적합투자자가 ELS·DLS 청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○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ELS·DLS 판매 전 과정을 녹취·보관하고 고객요청 시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	<p>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생명보험협회 변액연금 계약권유준칙 (‘17.1.1.)</p> <p>금융감독원 행정지도 (‘17.1분기)</p> <p>금융투자업규정 (‘17.2분기)</p> <p>* 녹취 의무화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(2100-2637)</p> <p>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00-2657)</p> <p>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(02-3145-7590)</p>												
10	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사고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현 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망 위자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19세 이상·60세 미만: 45백만원 >19세 미만·60세 이상: 40백만원 </td> </tr> <tr> <td>후유장애 위자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>19세 이상 ~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>19세 미만,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</td> </tr> <tr> <td>장 레 비</td> <td>>3백만원(1인당)</td> </tr> <tr> <td>입원간병비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휴업손해</td> <td>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현 행	사망 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19세 이상·60세 미만: 45백만원 >19세 미만·60세 이상: 40백만원 	후유장애 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>19세 이상 ~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>19세 미만,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	장 레 비	>3백만원(1인당)	입원간병비	-	휴업손해	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0%	<p>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(‘17.3.1.)</p>	<p>금감원 보험감독국 (02-3145-7467)</p>
구 분	현 행															
사망 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19세 이상·60세 미만: 45백만원 >19세 미만·60세 이상: 40백만원 															
후유장애 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>19세 이상 ~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>19세 미만,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능력상실률 × 70% 															
장 레 비	>3백만원(1인당)															
입원간병비	-															
휴업손해	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0%															

연 번	제 목	주 요 변 경 내 용	관 련 법 규 (시 행 일)	담 당 기 관 (연 락 처)															
11	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	(개선) ○ 국민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하고, 연령별·상해수준별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수준이 차등되도록 함	선불카드 표준약관 (‘17.3.1.)	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(02-3145-7441)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개 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망 위자료</td> <td>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후유장애 위자료</td> <td>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-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-</td> </tr> <tr> <td>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</td> </tr> <tr> <td>-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외-</td> </tr> <tr> <td>▶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</td> </tr> <tr> <td>장 례 비</td> <td>▶ 5백만원(1인당)</td> </tr> <tr> <td>입원간병비</td> <td>▶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 상해자(상해등급 1~5급)에게 간병비(일용근로자 임금기준)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▶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, 입원한 유아 (만 7세미만)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(최대 60일)</td> </tr> <tr> <td>휴업손해</td> <td>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개 정	사망 위자료	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	후유장애 위자료	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-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-	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	-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외-	▶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	장 례 비	▶ 5백만원(1인당)	입원간병비	▶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 상해자(상해등급 1~5급)에게 간병비(일용근로자 임금기준)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▶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, 입원한 유아 (만 7세미만)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(최대 60일)	휴업손해	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5%
		구 분			개 정														
		사망 위자료			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														
		후유장애 위자료			(노동능력상실률 50% 이상시) -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-														
▶ 60세 미만 : 8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5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																			
-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외-																			
▶ 60세 미만 : 45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 ▶ 60세 이상 : 40백만원 × 노동 능력상실률 × 85%																			
장 례 비	▶ 5백만원(1인당)																		
입원간병비	▶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 상해자(상해등급 1~5급)에게 간병비(일용근로자 임금기준)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▶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, 입원한 유아 (만 7세미만)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(최대 60일)																		
휴업손해	1일 수입감소액 * 휴업일수 × 85%																		
(현행) ○ 무기명식 선불카드(기프트카드)의 분실·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 사용금액 보상을 거부																			
○ 선불카드의 발행금액(또는 충전액)의 80%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 요청 가능																			

연 번	제 목	주 요 변 경 내 용	관 련 법 규 (시 행 일)	담 당 기 관 (연 락 처)
12	창업·벤처기업 전문 PEF 도입	(개선) ○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·도난 신고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을 허용하고,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도 보상 가능 ○ 선불카드(1만원권 이상)의 발행금액 (또는 충전액)의 60%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 환불요청 가능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‘17.1.1.)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02-2100-2665)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(02-3145-6715)
		3. 시민과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.		
13	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'이익미실현기업' 요건 추가	(신규도입) ○ 창업·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·벤처전문 PEF 제도를 도입* * 창업·벤처전문PEF에 세제혜택(법인세액 공제, 소득공제 등)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 맞추어 '17.1.1. 시행 - (운용제한) 출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펀드재산의 50%이상을 창업자·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	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‘17.1.1.)	한국거래소 (02-3774-9710)
		(현행) ○ 이익미실현(적자) 상태에 있는 기업은 코스닥시장 일반상장이 불가능 (개선) ○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추가 -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상장주관사에 엄격한 실사 의무와 책임을 부과		

연 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									
14	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개편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입한도*가 국민소득수준 변동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아 목돈 마련효과가 부족한 측면 *연간 저축납입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농어민 144만원 -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민이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대폭 상향* *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240만원 ○ 다만,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율은 일부 조정 - (기존) 일반 농어민 0.9~1.5% 저소득 농어민 3.0~4.8% - (개편) 일반 농어민 1.5~2.5% 저소득 농어민 6.0~9.6% 	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7.1월 이후)	금융위원회 은행과 (2100-2952)															
15	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햇살론 대출을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매년 0.3%p 금리인하(최대 1.2%p 인하)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햇살론 대출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금리인하 폭을 최대 1.8%p까지 확대* *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금리인하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상환 기간</th> <th>1년 이상</th> <th>2년 이상</th> <th>3년 이상</th> <th>4년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존</td> <td>0.3%p</td> <td>0.6%p</td> <td>0.9%p</td> <td>1.2%p</td> </tr> <tr> <td>개선</td> <td>0.3%p</td> <td>0.7%p</td> <td>1.2%p</td> <td>1.8%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상환 기간	1년 이상	2년 이상	3년 이상	4년 이상	기존	0.3%p	0.6%p	0.9%p	1.2%p	개선	0.3%p	0.7%p	1.2%p	1.8%p	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 변경 합의서 (17.1.2.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3) 서민금융진흥원 (02-2128-8114)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(042-480-4039)
상환 기간	1년 이상	2년 이상	3년 이상	4년 이상															
기존	0.3%p	0.6%p	0.9%p	1.2%p															
개선	0.3%p	0.7%p	1.2%p	1.8%p															
16	정책모기지 개편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모기지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고소득층 및 실수요 외 수요 까지 정책모기지로 쏠림현상 발생 	주택금융공사 상품약관 (17.1.1.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6)															

연 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모기지 요건*을 서민·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,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확대·공급 ('16년 41조원→'17년 44조원) * (디딤돌대출) 주택가격 6→5억원, (보금자리론) 소득요건 신설(연 7천만원), 주택가격 9→6억원 등 		
4.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.				
17	잔금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확대시행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빛은 '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' 선진 여신 관행을 은행·보험권에 안착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,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등 소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	잔금대출 ('17.1.1일 이후 분양공고분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(2100-2835,2994)
18	가격급락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신설 등 공매도 부작용 방지 규제 강화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격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, 가격급락 종목에 대해서는 제도 부재 ○ 공매도 규제위반 중 결재불이행 건에 대해서만 매도증권을 매도 주문일에 사전납부하는 패널티 부과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"공매도 과열종목"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○ 공매도 관련 모든 규제 위반시에 매도증권을 매도주문일에 사전 납부 하도록 하는 패널티 부과 	거래소 업무규정 (17.1분기)	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(02-3774-8590) 코스닥시장부 (02-3774-9610)

연 번	제 목	주 요 변 경 내 용	관 련 법 규 (시 행 일)	담 당 기 관 (연 락 처)
19	파생상품시장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규제가 획일적·경직적으로 설정되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활용 제한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하는 헤지전용계좌를 도입하고 등 계좌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배제 ○ 손실위험이 제한적인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	거래소 업무규정 (17.2분기)	한국거래소 (051-662-2791)
20	투자위험이 높은 공모주 배정전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부여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PO 공모주의 상장후 가격이 공모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제도 미도입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IPO 등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기간동안 공모가격의 90%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환매청구권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코스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시 : 상장 후 6개월 간 환매청구 허용 · 코스닥 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시 : 상장 후 3개월 간 환매청구 허용 · 공모가격을 수요예측등 없이 단일가격 방식으로 결정시 : 상장 후 1개월 간 환매청구 허용 · 증권신고서에 공모가격 산정근거 기재 생략시 : 상장 후 1개월 간 환매청구 허용 · 수요예측 참여기관 범위 확대시 : 상장 후 1개월 간 환매청구 허용 	(금융투자협회) 증권인수업무규정 (17.1.1.)	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(02-3145-8442)